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총무과	1
2.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4

(2012. 5. 17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5월 8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2년 5월 11일

나. 의안번호 : 12-29

4. 관련근거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
나.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표준안)」
(행정안전부)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」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「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」를 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.

<주요내용>

1. 안 제4조제4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에 대하여 직급별 또는 직종별로 제한 항목을 두었으나, 모든 항목을 삭제하고 단일화하여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함.
2. 안 제4조2를 신설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2(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)에 의해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.
3. 안 제5조에서는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위원회로 하되 다만 5급 상당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체 또는 시·도 인사위원회에 의뢰 등 선택적으로 실시하며, 별정직 임용시 공고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비서관 및 비서 임용, 초빙의 경우에 외국인 임용,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, 기구·직제 개편으로